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89호 2012. 4. 30.(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29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3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5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31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32호 석남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06호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열람
공고 ----- 3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08호 신조 공인 공고 -----	3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3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16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3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520호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3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29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경서지구, 검암지구 등에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75점)을 고시합니다.

2012. 4.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당하 구획정리사업지구
- 측량연월일 : 2012년 4월 2일[지적도근점 재설치 75점]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북부지사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도근점명	명 칭	중부좌표		계양좌표		비고
		x	y	x	y	
163	지적도근점	-	-	-6744.20	-3331.97	
164	지적도근점	-	-	-6757.37	-3044.12	
165	지적도근점	-	-	-6861.80	-3046.87	
170	지적도근점	-	-	-6944.12	-3342.97	
171	지적도근점	-	-	-6958.72	-3053.33	
172	지적도근점	-	-	-7056.99	-3058.23	
173	지적도근점	-	-	-7158.58	-3062.85	
174	지적도근점	-	-	-7257.66	-3068.08	
177	지적도근점	-	-	-7152.72	-3202.48	
178	지적도근점	-	-	-7143.93	-3349.77	
220	지적도근점	-	-	-7052.29	-3194.54	
221	지적도근점	-	-	-6951.86	-3190.77	
222	지적도근점	-	-	-6851.99	-3185.59	
232	지적도근점	-	-	-7044.93	-3346.36	
3422	지적도근점	-	-	4008.30	-7836.21	
3423	지적도근점	-	-	4034.32	-7916.59	
3424	지적도근점	-	-	4106.63	-7986.14	
3457	지적도근점	-	-	3838.82	-7093.15	
3458	지적도근점	-	-	3859.78	-7195.47	
3459	지적도근점	-	-	3892.61	-7343.99	
3460	지적도근점	-	-	3901.59	-7381.99	
3461	지적도근점	-	-	3936.31	-7523.75	
3462	지적도근점	-	-	3979.54	-7709.30	
3934	지적도근점	-	-	4028.49	-5891.07	
3935	지적도근점	-	-	3973.72	-6027.20	
3936	지적도근점	-	-	3923.61	-6152.88	
3937	지적도근점	-	-	3886.62	-6271.88	
3938	지적도근점	-	-	3858.96	-6383.44	
3939	지적도근점	-	-	3831.36	-6514.19	
3941	지적도근점	-	-	3826.62	-6640.83	
3942	지적도근점	-	-	3814.17	-6780.41	
3943	지적도근점	-	-	3817.33	-6874.47	
3944	지적도근점	-	-	3825.62	-6993.04	

도근점명	명 칭	중부좌표		계양좌표		비고
		x	y	x	y	
4271	지적도근점	451793.74	171381.24	1653.11	-3335.44	
4297	지적도근점	451751.51	171601.64	1611.45	-3114.91	
4299	지적도근점	451693.02	171409.99	1552.47	-3306.41	
4300	지적도근점	451738.49	171394.88	1597.90	-3321.65	
4313	지적도근점	451769.97	171371.85	1629.31	-3344.76	
4314	지적도근점	451685.82	171385.64	1545.19	-3330.75	
4315	지적도근점	451623.16	171415.63	1482.61	-3300.59	
4316	지적도근점	451553.24	171440.42	1412.75	-3275.62	
4589	지적도근점	451742.37	171335.29	1601.63	-3381.22	
4590	지적도근점	451619.88	171373.76	1479.22	-3342.45	
4594	지적도근점	451570.92	171366.67	1430.24	-3349.41	
4595	지적도근점	451609.21	171348.77	1468.48	-3367.41	
4601	지적도근점	451510.74	171020.95	1369.19	-3694.97	
4611	지적도근점	451113.93	170933.70	972.16	-3781.23	
4615	지적도근점	450833.77	170968.63	692.08	-3745.59	
4618	지적도근점	450712.16	171002.11	570.56	-3711.79	
4619	지적도근점	450713.46	170964.62	571.77	-3749.28	
4620	지적도근점	450716.28	170906.25	574.45	-3807.64	
4621	지적도근점	450568.30	170891.22	426.43	-3822.32	
4622	지적도근점	450567.76	170958.81	426.05	-3754.71	
4623	지적도근점	450553.85	170999.07	412.24	-3714.42	
4624	지적도근점	450511.34	170997.36	369.73	-3716.03	
4626	지적도근점	451152.26	171103.35	-	-	
4673	지적도근점	450711.35	171040.72	569.84	-3673.18	
4684	지적도근점	450873.81	171216.22	-	-	
4689	지적도근점	451152.46	171169.01	-	-	
4709	지적도근점	451209.68	171194.15	-	-	
4938	지적도근점	-	-	4255.32	-5311.06	
4939	지적도근점	-	-	4219.47	-5412.04	
4940	지적도근점	-	-	4187.59	-5515.83	
4941	지적도근점	-	-	4144.38	-5603.69	
4942	지적도근점	-	-	4112.36	-5683.02	
4943	지적도근점	-	-	4070.32	-5767.21	
5146	지적도근점	450949.90	169385.13	804.22	-5329.47	
5147	지적도근점	450898.36	169383.69	752.67	-5330.78	
5149	지적도근점	450849.66	169381.87	703.97	-5332.47	
5150	지적도근점	450798.55	169444.70	653.01	-5269.51	

도근점명	명 칭	중부좌표		계양좌표		비고
		x	y	x	y	
5151	지적도근점	450771.46	169513.45	626.09	-5200.69	
5152	지적도근점	450753.09	169567.05	607.86	-5147.04	
5202	지적도근점	450755.45	169313.91	609.57	-5400.20	
5206	지적도근점	450696.17	169172.42	549.93	-5541.53	
7418	지적도근점	-	-	-6749.61	-3251.43	
7419	지적도근점	-	-	-6751.89	-3181.13	
7420	지적도근점	-	-	-6711.42	-3180.31	
7421	지적도근점	-	-	-6841.84	-3336.58	
7422	지적도근점	-	-	-6947.26	-3259.88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3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5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0-36호(2010.07.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석남동 111-76번지 일원의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5호선)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4)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공사준공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76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2류5호선)
 - 【명칭】 소로2-5호선 도로개설공사(미집행구간)
4. 사업의 규모 : L = 43m, B = 8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엑셀런트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 황해득, 손흥기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18 3층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1. 12. 31.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12. 12. 31.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31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오류동 제2외곽(김포~인천)순환 고속도로 사업지구내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11점)을 고시합니다.

2012. 4.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재지 : 인천 서구 오류동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사업지구내
- 측량연월일 : 2011년 1월 30일[지적도근점 11점]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북부지사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일련번호	명 칭	계양좌표		중부좌표		비고
		X	Y	X	Y	
7155	지적도근점	5526.30	-9029.97	454931.43	166460.07	
7156	지적도근점	5540.30	-8870.56	454733.75	166498.46	
7157	지적도근점	5333.12	-8675.05	454484.73	166463.41	
7158	지적도근점	5150.23	-8475.29	454387.87	166604.69	
7159	지적도근점	4984.83	-8230.22	454232.98	166596.88	
7160	지적도근점	4774.05	-8267.74	454931.43	166460.07	
7161	지적도근점	4576.48	-8228.74	454733.75	166498.46	
7162	지적도근점	4327.35	-8263.02	454484.73	166463.41	
7163	지적도근점	4230.92	-8121.47	454387.87	166604.69	
7164	지적도근점	4076.00	-8128.81	454232.98	166596.88	
7165	지적도근점	3925.75	-8174.22	454082.87	166551.0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32호

석남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92번지 일원의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6호(2009.09.21)로 정비구역이 결정되고, 제2011-14호(2011.06.07)로 변경(경미한사항) 고시된 석남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59)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70)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석남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서구 석남동 592번지 일원	20,450	감) 10.5	20,439.5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 정비구역 결정(변경)사유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6호(2009.9.21.)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제2011-141호(2011.6.7.)로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사항)이 결정 고시된 석남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조정과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차량출입허용(불허)구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함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①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450	감) 10.5	20,439.5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50	감) 10.5	20,439.5	100.0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조정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63	신현주공APT~ 서인천APT	일 반 미관지구	중1-27	36,600	1,060 1,380	편측15	인고 제109호 (1999.9.9)	-
기정	68	석남동 중1-27~ 광2-1	일 반 미관지구	중1-44	20,100	670	양측15	인고 제109호 (1999.9.9)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격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6	10~16	국지 도로	168	대로 2-29	중로 1-44	일반	-	-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서구 석남동 589-9번지 일원	1,101.7	-	1,101.7	인고 제2009-296호 (09.9.21)	조성 후 무상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서구 석남동 581-2번지 일원	1,859.0	-	1,859.0	인고 제2009-296호 (09.9.21)	조성 후 무상귀속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석남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0,450	서구 석남동 592번지 일원	98	-	-	98	-	-
변경	석남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0,439.5	서구 석남동 592번지 일원	98	-	-	98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조정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 지구 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변경	석남3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20,439.5	기정	1	10,683.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이하	240%이하 (250%이하)	85m이하
			기정	2	5,853.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25%이하 (238%이하)	65m이하
			변경	2	5,84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25%이하 (235%이하)	65m이하
			기정	1-1	1,101.7	주차장	90%이하	1,500%이하	20m이하
건축물 용도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획지 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규정에 의한 미관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기정	획지 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규정에 의한 미관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기정	획지 1-1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 한계선	공동주택 용지	·무지개1로(20m) 경계로부터 3m후퇴 건축한계선 지정 ·석전길(10~16m) 경계로부터 양측으로 3m후퇴 건축 한계선 지정				

<p>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p>완화기준적용 (변경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적을 인센티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16.55% + 지하주차장 계획 10% = 236.55% - 계획용적률 : 235%(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45%)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571 618 1385 716"> <tr> <td>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td> <td>40% 이상</td> <td>30%이상 40%미만</td> <td>20%이상 30%미만</td> </tr> <tr> <td>용적률 인센티브</td> <td>10%</td> <td>5%</td> <td>3%</td> </tr> </table>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획지 2-1(당초1-1)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보전 계획	<p>자연 ·대상지의 지형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p>	-
	<p>생활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주요 예상지점에 대한 환경영향분석,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후 사업시행</p>	-
	<p>사회경제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최소화</p>	-
재난방지 계획	<p>화재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수립</p>	-
	<p>수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p>	-
	<p>교통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 대한 처리방안 계획</p>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사업 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
	보행 안전대책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영을 제한(07:00 ~ 09:00, 17:00 ~ 19:00)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 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
사업완료시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절대정화구역(50M) 및 상대정화구역(200M) 에 사업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제외하여 계획	-

②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향후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타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획지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변경	1	11,785.6	석남동 590-5번지 일원	10,683.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1		석남동 589-9번지 일원	1,101.7	주차장
기정	2	7,712.3	석남동 581-37번지 일원	5,853.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		석남동 581-2번지 일원	1,859.0	어린이공원
변경	2	7,701.8	석남동 581-37번지 일원	5,84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		석남동 581-2번지 일원	1,859.0	어린이공원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①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②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
기존 수목 현황 및 활용 계획	·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보호수 및 고유수종과 관상가치가 있거나 대형목(30cm 이상)이 없음 ·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 친화적 휴식공간조성	-
나무은행 운영계획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

1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① 교통처리계획(변경)

- 대상지 내 공동주택용지(획지1, 획지2)에 대하여 진출입을 위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소로1-16호선변 중로1-44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세가로 접촉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
변경	소로1-16호선변 중로1-44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잦은 세가로 접촉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차량출입구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 조정

②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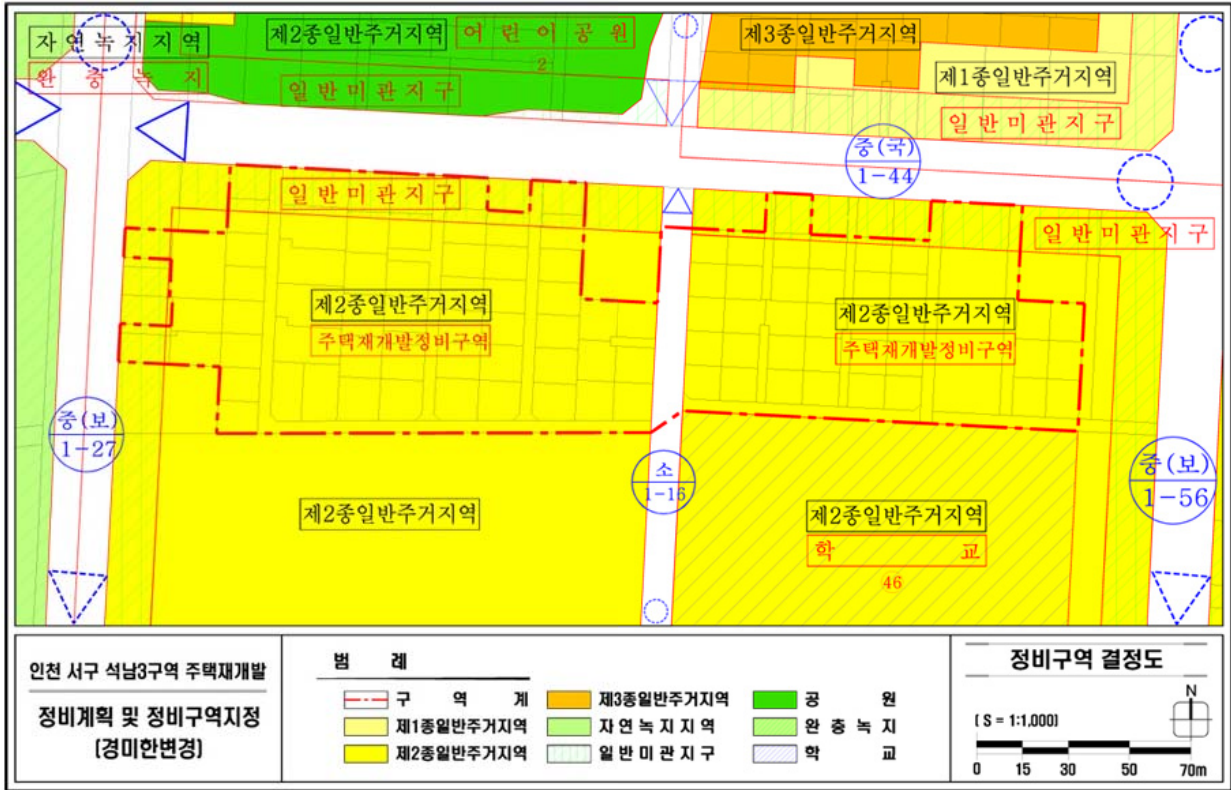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정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 기반시설 필요시, 정비기반시설을 추가확보

14) 관련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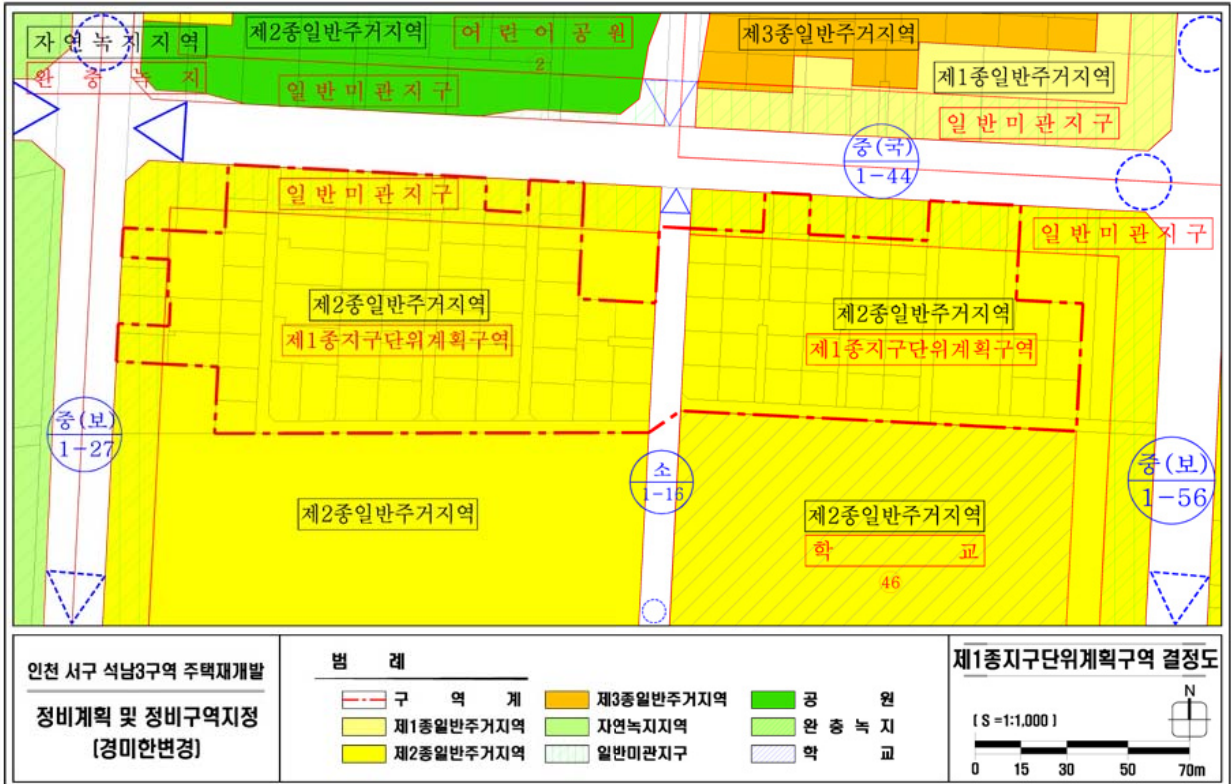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서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정비계획(변경)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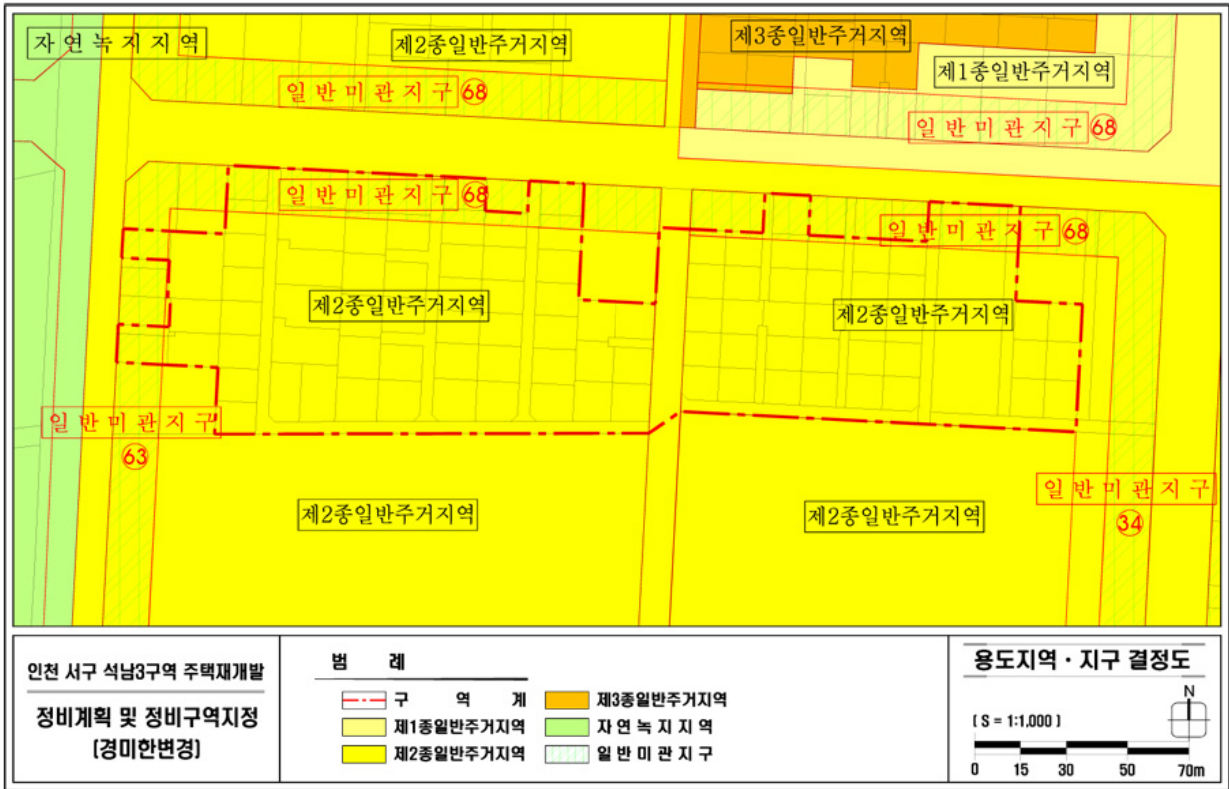
[첨부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도면(변경없음)



[첨부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면(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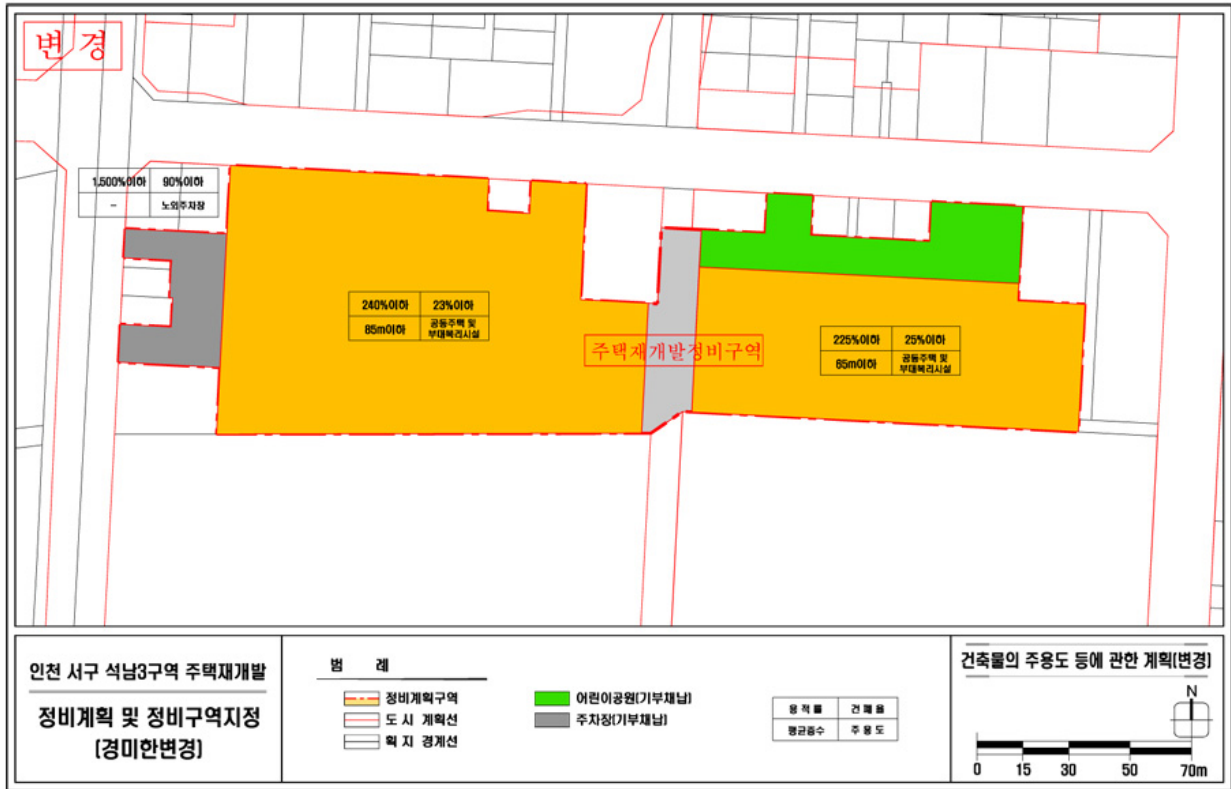
[첨부 3] 용도지역 결정도면(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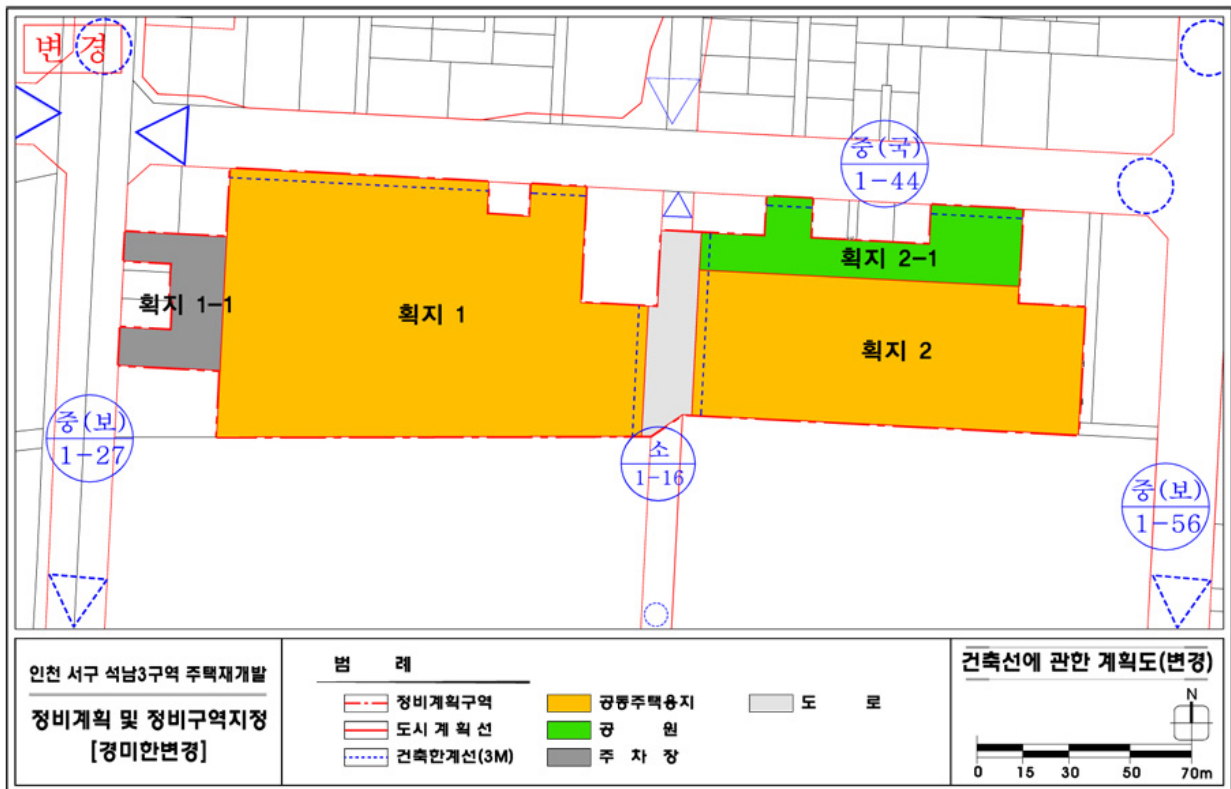
[첨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면(변경없음)



[첨부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도면(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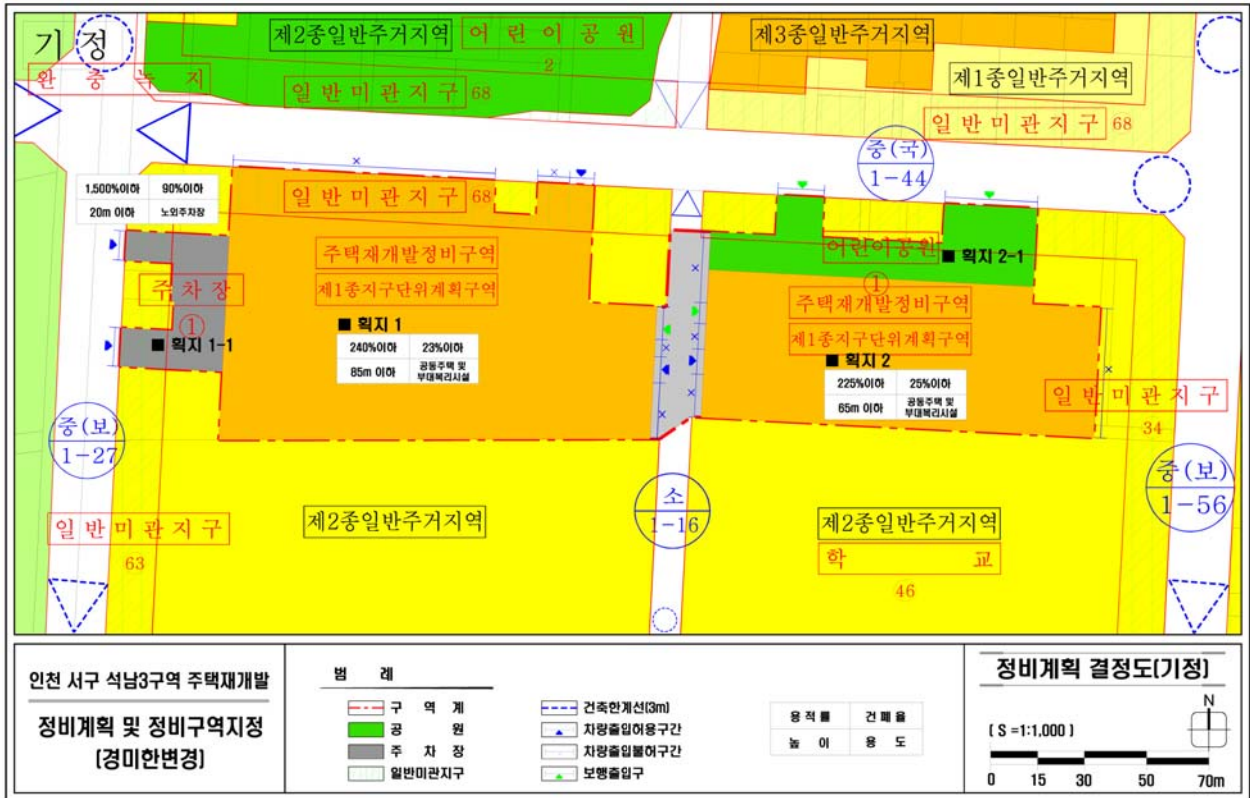
[첨부 6] 건축선에 관한 계획도면(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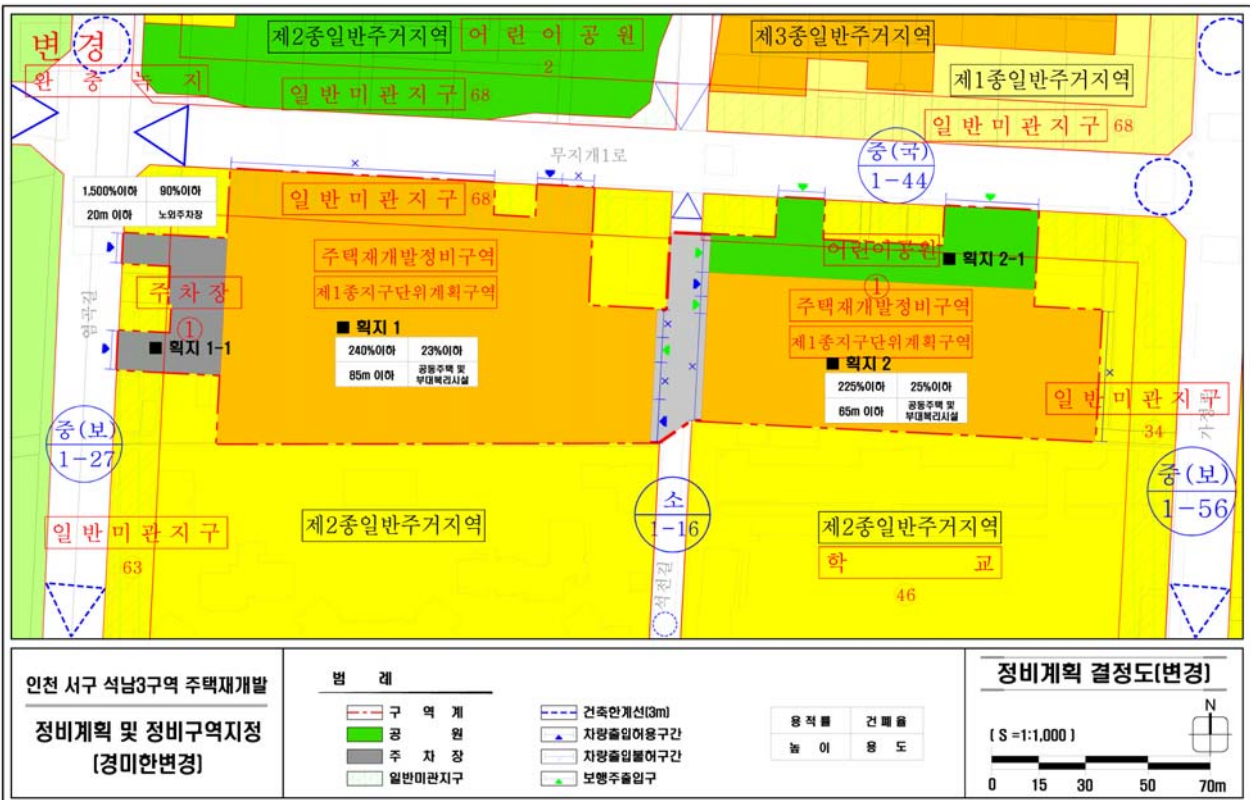
[첨부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면(변경없음)



[첨부 8-1]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도면(기정)



[첨부 8-2]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도면(변경)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2012. 04. 20.

- 석남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계획 변경 조치계획

1. 인천광역시청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 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교통 기획과	○ 별도 검토의견 없음	-	-
주택환경 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면적의 변경(10.5㎡),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건축위원회)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차량출입허용/불허 구간 일부 변경)은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며, ○ 2012. 2. 1. 개정·시행된 도정법 제4조제1항제6의3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의무 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구역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96호(2009.08.21)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인가 전 측량결과 및 건축심의결과 반영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추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도정법 제30조제4호에 따라‘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음 ○ 도정법 제20조의3제2항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무대상일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2. 서구청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검토 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교통 행정과	○ 출입구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시 교통사고 방지시설물(고원식 보도블럭, 반사경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차면수에 대하여도 법정 주차대수를 지킬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사업시행인가 시 교통시설 및 주차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설계)를 수립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건축과	○ 의견없음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01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일부개정(‘11. 12. 8. 및 ‘12. 1.31)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명칭변경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에 따른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은 물론,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특별임용 명칭변경 및 보건진료직 응시자격 요건 신설, 기초생활 수급자 수수료 면제
- 나. 고졸자의 공무원 충원확대를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제도의 학교장 추천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 교육감 및 학교장 추천대상자 : 익년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18세)

다. 그 밖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에 따라 일부미비사항 정비

-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직군·직렬분류체계에 맞게 개정
- 통신직렬 → 방송통신직렬로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32-560-4102, FAX : 032-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일로부터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에”를 “응시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20일 전에”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를 포함한다.)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6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로 한다.

제18조 본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의사발표의”를 “의사 표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를 “경력경쟁임용시험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23조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임용 하는 경우에”를 “경력경쟁임용 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특별임용대상자는”을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호 “졸업하고”는 “졸업(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하고”로 하며, 제2호 단서조항으로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임용예정직급은”을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를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를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로 한다.

제15조, 제22조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제32조 중 “임용된”을 “경력경쟁임용된”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서구 2013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2. 4.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명칭: 서구 주민참여 지역위원회 위원
2. 모집기간 : **2012. 4. 25 ~ 2012. 5. 9 (15일간)**
3. 모집인원 : **동별 15명 이내**
 - 해당동 거주자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를 원하는 사람
 - 동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2)
 - (※ 관내 영업소, 사업체 근무자 가능)
4. 주요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관 : 해당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모집인원보다 많이 접수되었을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 선정
 - 신청서식
 -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게재 및 주민센터 비치
6. 기타 사항은 서구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공고사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참고하시고, 동 주민센터 및 서구청 기획홍보실 예산팀(032-560-40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06호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6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관리계획변경의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 조사
-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별첨)
- 취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업
-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개발제한구역 보전가치 증진방안
- 불법행위의 지도단속
-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의 운용계획
- 구역관리 전산망의 운영 및 활용방안
- 재원조달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관리계획(안) 입지시설 현황

구분	시 설 명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적 (㎡)				입지 시설
				부지면적	형질변경		연면적	
계	총 7개 시설			1,306,033	237,196		24,711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1,144,312	178,562		4,270	
연희자연공원	시장	서구 연희동 산127 일원	1,134,112	변경	168,362	변경	4,170	관리사무소 등
				당초	259,100	당초	5,030	
석남체육공원	구청장	서구 석남동 산6 일원	10,200	10,200		100	관리동, 화장실 등	
선형·필수시설				4,877	4,769		3,427	
도시철도208정거장	시장	서구 검암동 244-24 일원	1,432	1,324		878	정거장	
도시철도209정거장	시장	서구 검암동 94-64 일원	3,445	3,445		2,549	정거장	

※ 위 내용은 관련기관 협의 및 중도위 심의 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G.B관리팀 / ☎ 032-560-4684)

3.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 서류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08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3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인증기 구입(가정1동)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2년 4월 30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 조 공 인 인 영

신조 공인명	규격(㎠)	신조 공인인영	비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1동 민원전용 (인증기)	2.4×2.4		인증기 구입
가정1동장인 /민원전용 (인증기)	2.1×2.1		인증기 구입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1동 민원전용2 (인증기)	2.4×2.4		인증기 구입
가정1동장인 /민원전용2 (인증기)	2.1×2.1		인증기 구입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12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4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가 되었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10976호, 2011.07.28)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등 업무가 군수·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955호, 2008.03.19)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 (우)404-701/인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위생과
- 전화 : 032-560-4383, 팩스 : 032-560-2756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516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원
4. 수용재결 대상토지 :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121-2번지 외16필지
5. 수용재결 대상물건 :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139번지 상 수목 등 600건
6. 열람기간 : 2012. 04. 30. ~ 2012. 05. 14.
7.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032-560-5905)
8.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 전략사업추진팀(☎032-560-5905)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 명단 1부

2012. 04. 2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수용 재결 신청 내역(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성 명	
1	심곡동	121-2	답	343	자연녹지 (343)	237.2/410	이승주	(주)경기은행, (주)정우상호신용금고, (주)국민은행, (주)광주은행,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주), 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서울보증보험(주), (주)케이알앤씨, 인천시 남구청, 남인천세무서, 조응진
2	심곡동	121-6	제	67	자연녹지 (67)	237.2/410	이승주	(주)경기은행, (주)정우상호신용금고, (주)국민은행, (주)광주은행,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점, 농협은행(주), 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울보증보험(주), (주)케이알앤씨, 조응진
3	심곡동	122	답	1,507	자연녹지 (1,507)	1/1	조윤성	
4	심곡동	125-2	답	29	자연녹지 (29)	156/17316	배광수	
						156/17316	배윤수	
5	심곡동	125-3	제	13	보존녹지 (13) 자연녹지 (0)	156/17316	배광수	
						156/17316	배윤수	
6	심곡동	125-5	천	14	자연녹지 (14)	156/17316	배광수	
						156/17316	배윤수	
7	심곡동	125-7	제	13	자연녹지 (13)	156/17316	배광수	
						156/17316	배윤수	
8	심곡동	125-8	천	146	자연녹지 (90)	156/17316	배광수	
					자연녹지 (90)	156/17316	배윤수	
					보존녹지 (56)	156/17316	배광수	
					보존녹지 (56)	156/17316	배윤수	
9	심곡동	125-9	제	11	자연녹지 (11)	156/17316	배광수	
					자연녹지 (11)	156/17316	배윤수	
10	심곡동	125-11	제	45	자연녹지 (45)	156/17316	배광수	
					자연녹지 (45)	156/17316	배윤수	

수용 재결 신청 내역(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성 명	
11	심곡동	125-12	답	36	자연녹지 (36)	156/17316	배광수	
					자연녹지 (36)	156/17316	배윤수	
12	심곡동	125-14	천	22	자연녹지 (22)	156/17316	배광수	
					자연녹지 (22)	156/17316	배윤수	
13	심곡동	125-15	제	3	자연녹지 (3)	156/17316	배광수	
					자연녹지 (3)	156/17316	배윤수	
14	심곡동	139	전	2,830	자연녹지 (2830)	1/1	이기국	서인천농업협동조합
15	연희동	481-5	답	8	자연녹지 (8)	1/1	김일곤	
16	가정동	45	답	982	자연녹지 (982)	1/1	미등기	
17	가정동	46	답	1,265	자연녹지 (1265)	1/12	임계준	
						1/12	임학준	
						1/12	임성준	
						1/12	임의준	
						1/12	임구준	
						1/12	임하준	
						1/12	임용준	
						1/12	임해준	
						1/12	임정호	
						1/12	임경호	
						1/12	임덕순	
						1/12	임춘재	

수용 재결 신청 내역(지장물)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성 명	
1	심곡동	139	수목 포도나무	8년생	600	주	이기국	
			비가림시설 포도밭	비닐/철골 ø 33/ ø 48	2444.5	㎡		
			비가림시설 기동파이프	면적 부속물 ø 32/3m, 40개x13줄	1	식		
			비가림시설 기동파이프	면적 부속물 ø 48/2m, 40개x13줄	1	식		
			비가림시설 가로, 품	면적 부속물 ø 25/10m, 4개x40줄	1	식		
			비가림시설 세로장	면적 부속물 ø 25/10m, 10개x3x13줄	1	식		
			비가림시설 활대	면적 부속물 ø 22/2m, 100개x13줄	1	식		
			비가림시설 강선	면적 부속물 ø 1.2, 100mx6x13줄	1	식		
			울타리 웬스	철골/철망/차광막	325	m		
			울타리 기동 금속관	울타리 웬스부속물 ø 48, 250개	1	식		
			울타리 기동 금속관	울타리 웬스부속물 22mx2m, 280개	1	식		
			울타리 가시철	울타리 웬스부속물 300mx4줄, 1200m	1	식		
			울타리 패드	울타리 웬스부속물 400m	1	식		
			울타리 고정구	울타리 웬스부속물 400개	1	식		
			울타리 금속관	울타리 웬스부속물 ø 25x10m, 80개	1	식		
			성토 매립용	마사토 15t 덤프	400	포		
			포도순 고정클립		30000	ea		
			보도블록	비닐지지용	1500	ea		
			수목 개중나무	10년	1	주		
			하수관	PE D600	68	m		
			하수관	THP관(주름) D600	47.5	m		
			하우스 창고	차광/비닐/철골 ø 25/4.7*4.2	19.74	㎡		
			전기 농사용	계량기포함	1	식		
			관정 전기설비		1	식		
			수도관	2"	100	m		
			과수원 출입문	철재/철망/차광막	2	개소		
			퇴비(부산물)	20kg	250	포		
			고토석회	20kg	80	포		
			규산질비료	20kg	50	포		
			제어기	물자동조절용	1	식		
			점적시설	자동제어장치	1	식		
			파쇄기		1	ea		
			관리기		1	ea		
			공구	삼, 곡괭이 외	1	식		

수용 재결 신청 내역(지장물)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성 명	
			깨묵		1	톤		
			고속용 분무기	모타설치용	1	ea		
			소독용 통		3	ea		
			조리개		6900	ea		
			멀칭용 비닐	0.08*3m*100m	1300	m		
			농업손실보상금	포도	2444.5	m ²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520호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2.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3번지 외 8,624호
3. 결정·공시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구 세무과 주택평가부서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2. 4. 30 ~ 5. 29(30일간)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인터넷신청(<http://etax.incheon.go.kr>)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별지 제10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m ²)
	용도지역	건물연면적(m ²)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의견제출 내용	공 시 가 격 원	의 건 가 격 원
	신청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에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